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3호 2011. 6. 1. (수)

【 조 례 】

- 정선군조례 제2251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훈 령 】

- 정선군훈령 제392호 정선군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3
- 정선군훈령 제393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5
- 정선군훈령 제394호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7

【 고 시 】

- 정선군고시 제2011-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9
- 정선군고시 제2011-44호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14

【 공 고 】

- 정선군공고 제2011-315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30
- 정선군공고 제2011-316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1
- 정선군공고 제2011-32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34
- 정선군공고 제2011-322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6
- 정선군공고 제2011-323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38
- 정선군공고 제2011-324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 40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2011-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 4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6. 1.

정선군조례 제2251호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②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에 도세와 군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세를 우선 공제하고,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併記)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납세편의 제고 및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려고 함.

주 요 내 용

-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
(안 제17조의2)
 -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

정선군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3. 9.

정선군훈령 제392호

정선군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정선군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녹색환경과장, 산림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의를 개회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시행령”을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 2.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이용
- 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 4. 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불법 침입
-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 ② 보안담당관은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군수는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조부터 제3조, 제2장 제목, 제9조, 제3장 제목, 제12조부터 제23조, 제4장 제목,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지리정보”를 각각 “공간정보”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과 변경단어를 정비하고, 행정기구개편사항을 반영하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방안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1. 상위 법령 변경
 - :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폐지.
 -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
- 2. 행정기구개편사항 반영
 - : 개정 전 -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산업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을
 - : 개정 후 - 녹색환경과장, 산림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 3. 상위법률에 맞추어 용어변경
 - : 개정 전 : 지리정보
 - : 개정 후 : 공간정보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4. 22

정선군훈령 제393호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개정규정

정선군 공문서 배부번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수신자 기호표 (제2조 관련)

배부기관명	배부번호	배부기관명	배부번호
각 실 과	노	농업기술센터	로 - 1
기획감사실	노 - 1	보 건 소	로 - 2
주민생활지원과	노 - 2	상하수도사업소	로 - 3
자치행정과	노 - 3	읍·면, 출장소	도
세무회계과	노 - 4	정 선 읍	도 - 1
민원봉사과	노 - 5	고 한 읍	도 - 2
녹색환경과	노 - 6	사 북 읍	도 - 3
농업축산과	노 - 7	신 동 읍	도 - 4
산림정책과	노 - 8	화 암 면	도 - 5
관광문화과	노 - 9	남 면	도 - 6
지역경제과	노 - 10	여 량 면	도 - 7
건설방재과	노 - 11	북 평 면	도 - 8
도시건축과	노 - 12	임 계 면	도 - 9
		함백출장소	도 - 10
직속기관	로	정선군의회사무과	의회

개 정 이 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각종 문서의 신속·정확한 배부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공문서 배부번호규정을 정비함

주 요 내 용

- 부서의 명칭변경, 직제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문서 배부번호 정비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정 선 군 수

2011. 5. 24

정선군훈령 제394호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제14조제1항제3호 중 “호적등·초본”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환경산림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산림정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무기계약근로자 정수현황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청원경찰
		소 계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 부	현장공사 작업 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현 장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총 계	107	19	9	0	5	5	8	55	25
본청 소계	31	15	5	0	5	5	0	10	6
기획감사실	1	1				1			
주민생활지원과	3	3	2			1			
자치행정과	2	2				2			
세무회계과	6	3	3						3
녹색환경과	10	2			1	1		10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10	
관광문화과	1	1			1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2								2
도시건축과	4	3			3				1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소계	2	2	2						
농업기술센터									
보 건 소	2	2	2						
사업소 소계	2								2
상하수도사업소	2								2
읍면 소계	72	2	2	0	0	0	8	45	17
정 선 읍	14						2	10	2
고 한 읍	10	1	1					7	2
사 북 읍	13	1	1				1	7	4
신 동 읍	7						1	4	2
화 암 면	5						1	3	1
남 면	6						1	4	1
여 량 면	6						1	3	2
북 평 면	5							3	2
임 계 면	6						1	4	1

정선군고시 제2011-4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11년 군도2호(조동~북실)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6. 1.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단위 : km)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금회연장)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 유	⑧비 고
도로 구역 결정	군 도	군도2호 (조동-북실)	[전체구간] 시점 : 신동읍 조동리 종점 : 정선읍 북실리 [금회] 시점 : 정선읍 북실리 536-1번지 종점 : 정선읍 북실리 177-6번지	38.7 (1.6)	새비재 매화동 광 탄	2011 군도2호 (조동-북실)도로 확포장공사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1.06 ~2012.12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비치)

6.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033-560-2485)

○ 도로구역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및 정선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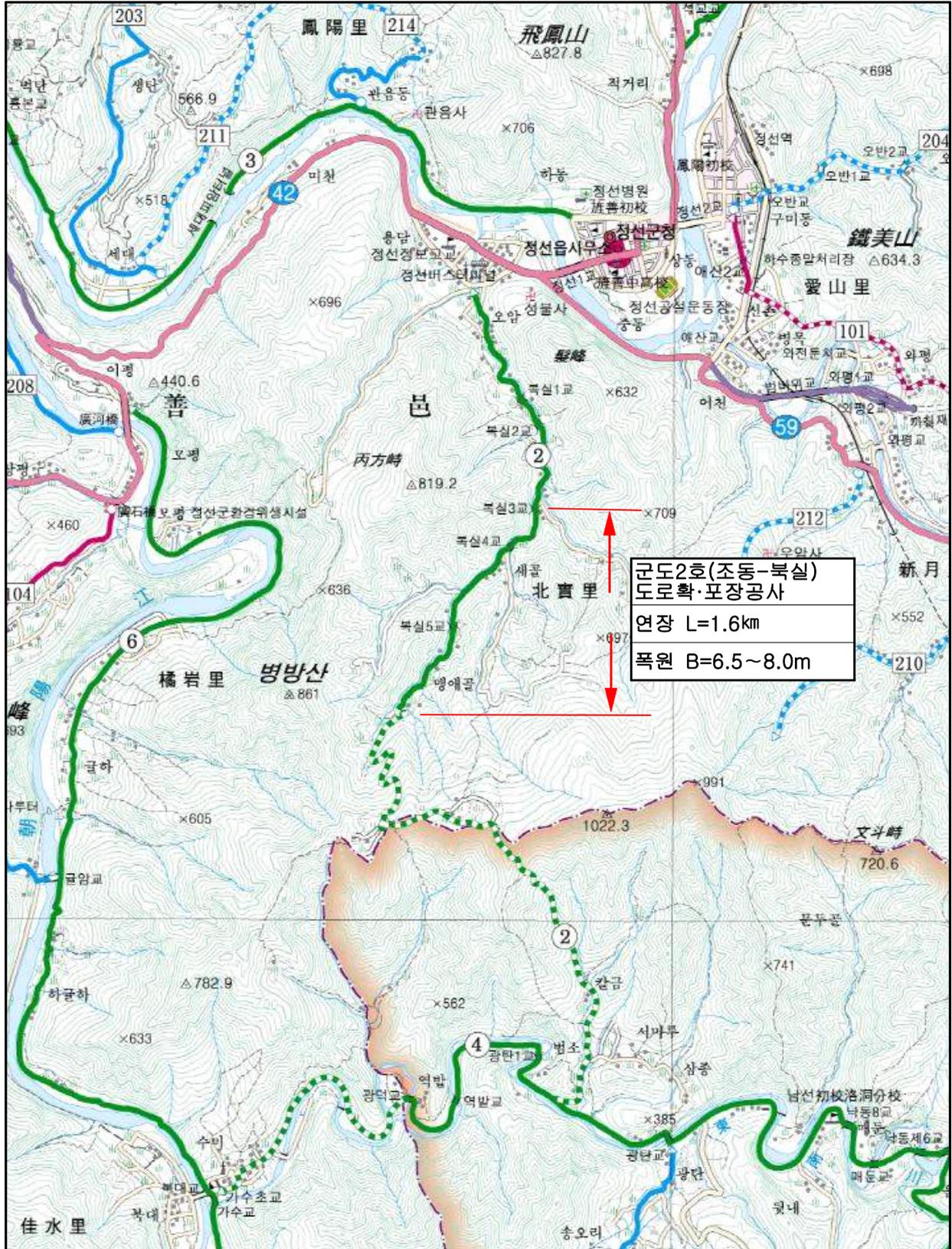
사 업 명 : 2011 군도2호선(조동~북실) 도로확·포장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정선읍 북실리	536-1	전	92	72	국	기획재정부
2	정선읍 북실리	533	임	248	244	임종수	정선읍 북실리 33
3	정선읍 북실리	532-1	도	1,570	483	국	건설부
4	정선읍 북실리	521-1	전	790	768	국	정선군
5	정선읍 북실리	534-1	도	249	249	국	정선군
6	정선읍 북실리	520-1	도	785	780	국	정선군
7	정선읍 북실리	829구	구	118,267	2,970	국	건설부
8	정선읍 북실리	518-2	도	1,221	1,201	국	정선군
9	정선읍 북실리	518-1	도	671	570	국	건설부
10	정선읍 북실리	515-2	도	817	816	국	정선군
11	정선읍 북실리	515-3	전	117	111	국	정선군
12	정선읍 북실리	512-4	도	30	30	국	건설부
13	정선읍 북실리	512-2	전	59	59	국	정선군
14	정선읍 북실리	512-5	도	421	382	국	정선군
15	정선읍 북실리	511-5	잡	333	333	국	정선군
16	정선읍 북실리	512-3	잡	110	110	국	재정경제부
17	정선읍 북실리	511-7	도	622	622	국	정선군
18	정선읍 북실리	512-1	전	206	206	국	재정경제부
19	정선읍 북실리	509-1	도	199	177	국	정선군
20	정선읍 북실리	511-6	도	161	161	국	정선군
21	정선읍 북실리	510-1	도	3	2	국	정선군
22	정선읍 북실리	497-3	대	132	131	국	정선군
23	정선읍 북실리	497	대	66	10	국	정선군
24	정선읍 북실리	497-4	도	47	41	국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5	정선읍 북실리	498-1	도	32	17	국	정선군
26	정선읍 북실리	494-1	도	206	206	국	정선군
27	정선읍 북실리	490-1	전	21	4	국	정선군
28	정선읍 북실리	490-2	도	675	651	국	정선군
29	정선읍 북실리	491-1	도	333	333	국	정선군
30	정선읍 북실리	492-1	도	16	16	국	정선군
31	정선읍 북실리	485-1	도	880	860	국	정선군
32	정선읍 북실리	482-1	도	101	101	국	정선군
33	정선읍 북실리	481-3	전	19	19	서장업	정선읍 북실리 793
34	정선읍 북실리	481-4	도	70	70	국	정선군
35	정선읍 북실리	178-6	도	751	678	국	정선군
36	정선읍 북실리	산43-1	임	288	288	국	정선군
37	정선읍 북실리	178-8	전	2,042	1,937	국	정선군
38	정선읍 북실리	178-3	도	684	211	김순천	춘천시 근화동 790-10
39	정선읍 북실리	178-9	도	101	91	국	정선군
40	정선읍 북실리	177-3	도	244	219	국	정선군
41	정선읍 북실리	177-7	도	868	772	국	정선군
42	정선읍 북실리	산43-2	임	443	406	국	정선군
43	정선읍 북실리	532	전	149	147	국	정선군
44	정선읍 북실리	521	전	387	25	국	정선군
45	정선읍 북실리	511-8	잡	15	10	국	정선군
46	정선읍 북실리	496-3	도	91	91	국	정선군
47	정선읍 북실리	496-4	도	117	117	국	정선군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 명	주 소
48	정선읍 북실리	497-1	도	7,188	856	국	건설부
49	정선읍 북실리	495-1	도	512	512	국	정선군
50	정선읍 북실리	490	전	663	13	국	정선군
51	정선읍 북실리	486-1	도	276	271	국	정선군
52	정선읍 북실리	486	전	83	45	국	정선군
53	정선읍 북실리	177-6	전	71	2	국	정선군

도로구역 위치도



정선군고시 제2011-44호

예미농공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9-124(2009.09.09)호로 지정고시된 예미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05. 24.

정 선 군 수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단지종류 : 지역특화단지
- 명 칭 :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07,770, 변경 107,260.8 , 감) 509.2m²

2. 산업단지의 목적(변경없음)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
-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전기업에 공장용지 적기공급
- 농촌지역의 생산기반 강화로 정선군의 자족적인 미래상을 정립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정선군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0. 12. 31
- 시행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 업종

-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종이및종이 제품제조업(1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기타 제품 제조업(33)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 분	대분류	중 분 류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5,649	감)14.6	75,634.4	100.0	
음식료품	C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25,106	감)39.3	25,066.7	33.1	
목재종이	C 제조업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외(16), 펄프,종이및종이제품제조업(17)	6,358	감)8.9	6,349.1	8.4	
기계	C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7,832	증)6	7,838	10.4	
지역특화업	C 제조업	식료품제조업(10), 음료제조업(11), 기타 제품 제조업(33)	23,715	증)36	23,751	31.4	
기타제조업	C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33)	12,638	감)8.4	12,629.6	16.7	

6. 용도지역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 용도지역계획(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07,770	감) 509.2	107,260.8	100.0	
계획관리지역	107,770	감) 509.2	107,260.8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7,770	감) 509.2	107,260.8	100.0	
◦ 산업시설용지	75,649	감)14.6	75,634.4	70.5	14개 블록
◦ 공공시설용지	26,730	감)514.8	26,215.2	24.5	
- 도로	15,253	감)73.1	15,179.9	14.2	3개노선(1,116m)
- 소공원	2,244	증)2.7	2,246.7	2.1	
- 완충녹지(구거)	9,233	감)444.4	8,788.6	8.2	
◦ 지원시설용지	5,391	증)20.2	5,411.2	5.0	
- 공동이용시설	2,053	증)0.6	2,053.6	1.9	관리사, 휴게시설, 위락시설
- 주차장	646	증)5	651.0	0.6	
- 폐수처리장	1,067	-	1,067.0	1.0	
- 저류지	1,625	증)14.6	1,639.6	1.5	

다.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변경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중로	기정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변경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 도로계획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면적)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99	900	일반도로			2,982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99	900	일반도로			2,969.3㎡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900	900	일반도로			6,175㎡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900	900	일반도로			6,176.2㎡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901	900	일반도로			6,033㎡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901	900	일반도로			6,034.4㎡

2) 주차장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노외주차장	1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646	
변경	노외주차장	1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651	증) 5

3) 공원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소공원	1	신동읍 예미리 895-3번지	2,244	
변경	소공원	1	신동읍 예미리 895-3번지	2,246.7	증) 2.7㎡

4) 녹지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완충녹지	1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896	
변경	완충녹지	1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711	감) 185
기정	완충녹지	2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75	
변경	완충녹지	2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87.5	증) 12.5
기정	완충녹지	3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4,162	
변경	완충녹지	3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3,890.1	감) 271.9

5) 저류시설계획(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저류시설	1	신동읍 천포리 499-2번지 일대	1,625	
변경	저류시설	1	신동읍 천포리 499-2번지 신동읍 예미리 896-5번지	1,639.6	증) 14.6

6) 폐수종말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구 분	번호	위 치	면 적 (㎡)	비고
폐수종말처리시설	1	신동읍 예미리 896-4번지 신동읍 천포리 499-1번지	1,067	

7)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상수도

구 분	용수량(㎡/일)	상수 공급계획	비 고
계	750	-	
공업용수	716	지방상수도(조동정수장 : 시설용량 3,300㎡/일)시설 계통을 통해 공급	
생활용수	34		

② 하수도

구 분	용수량(/일)	오·폐수 처리계획	비 고
계	512	-	
공장폐수	462	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자체처리	
생활오수	26		
지하수량	24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장은 설치하지 않으며, 폐기물처리전문업체를 통해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258.0 /일, 사업장 폐기물 42.37톤/일

9) 에너지 및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① 전력

구 분	전력사용량(kw)	전력공급계획	비 고
전 력	1,490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② 통신

구 분	통신수요량(회선)	통신공급계획	비 고
통 신	73	한국통신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여유율 : 30%

③ 에너지

구 분	열수요량(Gcal/년)	에너지공급계획	비 고
에너지	72,545	저유황경유 또는 LNG로 공급계획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공동이용시설은 2010.10월 설치 및 시공완료.
-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입주업체 가동 전 설치계획 임(2011.6월 사업착수)

8. 정선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등)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20,672,942	-	1,220,672,942	100.00		
도 시 지 역	42,582,840	-	42,582,840	3.48		
소 계	1,178,090,102	-	1,178,090,102	96.52		
관 리 지 역	계	223,746,462	-	223,746,462	18.32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	
	계 획 관 리 지 역	100,924,318	-	100,924,318	8.27	
	생 산 관 리 지 역	27,570,708	-	27,570,708	2.25	
	보 전 관 리 지 역	95,251,436	-	95,251,436	7.80	
농 림 지 역	946,201,373	-	946,201,373	77.51		
자연환경보전지역	8,142,267	-	8,142,267	0.67		

2) 행정구역별(신동읍)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9,703,095	-	119,703,095	100.0		
도 시 지 역	10,330,000	-	10,330,000	8.6		
소 계	109,373,095	-	109,373,095	91.4		
관 리 지 역	계	25,467,313	-	25,467,313	19.0	
	관 리 지 역 (미 세 분)	-	-	-	0.0	
	계 획 관 리 지 역	13,552,869	-	13,552,869	6.9	
	생 산 관 리 지 역	1,977,973	-	1,977,973	1.3	
	보 전 관 리 지 역	9,936,471	-	9,936,471	10.8	
농 림 지 역	81,972,782	-	81,972,782	70.7		
자연환경보전지역	1,933,000	-	1,933,000	1.6		

3) 농공단지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7,770	감) 509.2	107,260.8	
계 획 관 리 지 역	107,770	감) 509.2	107,260.8	구적오차 정정

※ 증감 사항은 구적오차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임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㉔	예 미 농공단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107,770	감)509.2	107,260.8	정선군고시 2009-124 호 (2009.9.9)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 정 사 유
변경	㉔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변경 : 107,770㎡ → 107,260.8㎡, 감) 509.2㎡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을 위해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변경) 하고자 함.

다.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변경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중로	기정	3	1,116	15,190	-	-	-	1	155	2,982	2	961	12,208
	변경	3	1,116	15,179.9	-	-	-	1	155	2,969.3	2	961	12,210.6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로번호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1,116	-	-	-		-	
소 계 (중로2류)						155	-	-	-		-	
변경	중로	2	1	15	집산도로	155	899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면적 변경
소 계 (중로3류)						961	-	-	-		-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484	900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면적 변경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477	901	900	일반도로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면적 변경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중로 2-1	중로 2-1	·면적감소 (감 12.7㎡)	·구적오차 정정
중로 3-1	중로 2-1	·면적증가 (증 1.2㎡)	·구적오차 정정
중로 3-2	중로 2-1	·면적증가 (증 1.4㎡)	·구적오차 정정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노외주차장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646	증) 5	651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 지 역

☑ 주차장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주차장	·면적증가 (증 5㎡)	·구적오차 정정

2) 공간 시설

가)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896	감)185	4,711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역지
변경	②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75	증)12.5	187.5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역지
변경	③	녹지	완충녹지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4,162	감)271.9	3,890.1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역지

☑ 녹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면적감소 (감185㎡)	·구적오차 정정
2	완충녹지	·면적증가 (증 12.5㎡)	·구적오차 정정
3	완충녹지	·면적감소 (감271.9㎡)	·구적오차 정정

나)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공원	소공원	신동읍 예미리 859-3번지	2,244	증) 2.7	2,246.7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역지

☑ 공원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소공원	·면적증가 (증2.7㎡)	·구적오차 정정

3) 방재시설

가) 유수지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수지	저류시설	신동읍 천포리499-2, 예미리896-5번지	1,625	증) 14.6	1,639.6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지

☑ 유수지결정(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1	유수지	·면적증가 (증 14.6㎡)	·구적오차 정정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가)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폐수종말처리장	신동읍 예미리896-4, 천포리499-1	1,067	-	1,067	정선군고시 2009-124호 (2009.9.9)	계획관리지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1)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	감	증	
계	107,770	-	107,260.8	감)	509.2	
A	공장시설용지 75,649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75,634.4	감)	14.6	
B	공공시설용지 22,888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22,837.8	감)	50.2	
C	녹지용지 9,233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일원	8,788.6	감)	444.4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계	107,770	-	107,260.8	감)	509.2		
공 장 시 설 용 지	75,649	-	75,634.4	감)	14.6		
A1- 1	공 장 용 지	3,101	신동읍 예미리 893-1번지 일원	3,108.8	증)	7.8	
A1- 2	공 장 용 지	5,989	신동읍 예미리 896-1번지 일원	5,981.3	감)	7.7	
A1- 3	공 장 용 지	6,649	신동읍 예미리 896-2번지 일원	6,648.3	감)	0.7	
A1- 4	공 장 용 지	6,358	신동읍 예미리 896-3번지 일원	6,349.1	감)	8.9	
A1- 5	공 장 용 지	6,564	신동읍 예미리 895-1번지 일원	6,553.2	감)	10.8	
A1- 6	공 장 용 지	4,320	신동읍 예미리 895-2번지 일원	4,308.4	감)	11.6	
A1- 7	공 장 용 지	6,564	신동읍 예미리 897-1번지 일원	6,555.7	감)	8.3	
A1- 8	공 장 용 지	6,340	신동읍 천포리 500-2번지 일원	6,333.7	감)	6.3	
A1- 9	공 장 용 지	4,731	신동읍 예미리 893-2번지 일원	4,729.2	감)	1.8	
A1-10	공 장 용 지	5,996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6,010.9	증)	14.9	
A1-11	공 장 용 지	3,002	신동읍 예미리 894-2번지 일원	3,005.0	증)	3	
A1-12	공 장 용 지	4,880	신동읍 예미리 898-1번지 일원	4,880.3	증)	0.3	
A1-13	공 장 용 지	4,091	신동읍 천포리 501-1번지 일원	4,094.5	증)	3.5	
A1-14	공 장 용 지	7,064	신동읍 천포리 501-2번지 일원	7,076.0	증)	12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 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공 공 시 설 용 지		22,888	-	22,837.8	감)	50.2		
B	B1-1	도로	3,045	신동읍 예미리 899번지 일원	2,969.3	감)	75.7	
	B1-2	도로	6,175	신동읍 예미리 900번지 일원	6,176.2	증)	1.2	
	B1-3	도로	6,033	신동읍 천포리 502번지 일원	6,034.4	증)	1.4	
	B2-1	주 차 장	646	신동읍 예미리 894-4번지 일원	651	증)	5	
	B3-1	소 공 원	2,244	신동읍 예미리 895-3번지 일원	2,246.7	증)	2.7	
	B4-1	공 동 이 용 시 설	2,053	신동읍 예미리 894-3번지 일원	2,053.6	증)	0.6	
	B5-1	폐수종말처리장	1,067	신동읍 예미리 896-4번지 일원	1,067	-		
	B6-1	오 폐 수 저 류 지	1,625	신동읍 천포리 499-2번지 일원	1,639.6	증)	14.6	
	녹 지 용 지		9,233	-	8,788.6	감)	444.4	
C	C1-1	완 총 녹 지	4,896	신동읍 예미리 903번지 일원	4,711	감)	185	
	C1-2	완 총 녹 지	175	신동읍 천포리 499-3번지 일원	187.5	증)	12.5	
	C1-3	완 총 녹 지	4,162	신동읍 천포리 506번지 일원	3,890.1	감)	271.9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1 ~ A1-14 (공장시설용지)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천포리 일원	용 도	허용용 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및 별표20 제1호 자목의 건축물(공장)
			불허용 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2항의 사업장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률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 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 건 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 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 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 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5GY), 명도(6이상~8미만),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 전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4-1 (공동이용시설)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일원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150%이하	
		높 이	·4층이하	
		배 치 (권 장)	·건축물의 전면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가각에 접한 대지에서는 접한 모든 도로의 전면 방향과 일치 ·건축한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대지 내에 입지하는 건축물은 인접 건축물과 건축선 일치	
		형 태 (권 장)	·외벽: 주변경관과 조화된 질이 높은 것을 사용토록 하며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수준을 동일하게 처리하거나 유사하게 처리하도록 권장 ·지붕: 경사지붕(경사지붕 구배:3/100이상, 5/100이하 권장)	
		색 채 (권 장)	·주조색은 건축물의 벽면, 보조색은 벽면 일부와 부속시설 등, 강조색은 지붕 등에 사용 권장 - 주조색 : 색상(5YR 5GY), 명도(8이상), 채도(2미만) - 보조색 : 색상(5YR ~ 5GY), 명도(6이상 ~ 8미만), 채도(4이하) - 강조색 : 색상(5YR ~ 5GY), 명도(6미만), 채도(6이하)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선정하되 정선군과 사전 협의 권장	
건 축 선	·도로와 접한 면은 건축한계선 1m 지정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성명·주소 : 별첨 1

10. 지형도면 고시

- 명 칭 : 정선 예미농공단지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94-1번지 일원
- 면 적 : 기정 107,770 , 변경 107,260.8㎡, 감) 509.2㎡
- 지형도면 : 게재생략

11. 관련도서 열람방법

- 장 소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033-560-2352)
- 기 간 : 2011.05.24~2011.06.07
- 열람시간 : 평일 09:00~18:00

[별첨 1]

정선 예미농공단지 [토지 및 권리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관리자	권리자 주소
계				107,260.8	107,260.8						
1	예미리	893-1	장	3,108.8	3,108.8	정선군					
2	예미리	893-2	장	4,729.2	4,729.2	정선군					
3	예미리	894-1	장	6,010.9	6,010.9	정선군					
4	예미리	894-2	장	3,005.0	3,005.0	정선군					
5	예미리	894-3	대	2,053.6	2,053.6	정선군					
6	예미리	894-4	차	651.0	651.0	정선군					
7	예미리	895-1	장	6,553.2	6,553.2	정선군					
8	예미리	895-2	장	4,308.4	4,308.4	정선군					
9	예미리	895-3	공	2,246.7	2,246.7	정선군					
10	예미리	896-1	장	5,981.3	5,981.3	정선군					
11	예미리	896-2	장	6,648.3	6,648.3	정선군					
12	예미리	896-3	장	6,349.1	6,349.1	정선군					
13	예미리	896-4	잡	1,050.4	1,050.4	정선군					
14	예미리	896-5	유	324.3	324.3	정선군					
15	예미리	897-1	장	4,733.4	4,733.4	정선군					
16	예미리	897-2	장	94.9	94.9	정선군					
17	예미리	898-1	장	4,880.3	4,880.3	정선군					
18	예미리	898-2	장	1,063.1	1,063.1	정선군					
19	예미리	899	도	2,247.2	2,247.2	정선군					
20	예미리	900	도	7,475.4	7,475.4	정선군					
21	예미리	901	도	1,858.3	1,858.3	정선군					
22	예미리	902	도	602.0	602.0	정선군					
23	예미리	903	공	3,481.5	3,481.5	정선군					
24	예미리	904	공	57.0	57.0	국산(농부)					
25	예미리	905	공	818.6	818.6	정선군					
26	예미리	906	공	1,002.5	1,002.5	정선군					
27	예미리	907	구	48.6	48.6	정선군					
28	예미리	908	구	342.4	342.4	정선군					
29	예미리	909	구	11.5	11.5	정선군					
30	천포리	499-1	잡	16.6	16.6	정선군					
31	천포리	499-2	유	1,315.3	1,315.3	정선군					
32	천포리	499-3	공	187.5	187.5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지분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위치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종류	관리자	관리자 주소
33	천포리	500-1	장	1,822.3	1,822.3	정선군					
34	천포리	500-2	장	6,238.8	6,238.8	정선군					
35	천포리	501-1	장	3,031.4	3,031.4	정선군					
36	천포리	501-2	장	7,076.0	7,076.0	정선군					
37	천포리	502	도	2,997.0	2,997.0	정선군					
38	천포리	503	공	390.9	390.9	정선군					
39	천포리	504	공	184.9	184.9	정선군					
40	천포리	505	공	24.9	24.9	정선군					
41	천포리	506	구	2,238.3	2,238.3	정선군					

정선군공고 제2011-315호

건축허가 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건축주에게 문서가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허가 취소 알림

나.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처분원인 :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라. 처분대상

허가일	허가번호	대지위치	건축주		비고
			주 소	성명	
2008.04.25	2008-건설도시과- 신축허가-17	화암면 화암리 897번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34-10번지	김영호	

마. 공고기간 : 2011. 05. 24. ~ 2011. 06. 07.(15일간)

바.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사. 문의사항 : 정선군 도시건축과 (☎ 033-560-2474)

건축허가 취소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06.07일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2011.06.07일부터 90일 이내에 정선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 05. .

정 선 군 수

정선군공고 제2011-316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5. 25.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
- 문화원 사업 및 운영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 문화원의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편성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으로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및 문의사항

- 제 출 처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67
 - 받 는 이 : 정선군 관광문화과 문화예술팀 김 정 서
 - 우편번호 : 233-701
 - FAX : 033) 560- 2593
- 문의사항 : 033) 560- 2562, 김 정 서

6. 참고사항

-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정선군조례 제 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정선군 문화원의 지원·육성 및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문화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공고 제2011-321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위반(보증가능금액실효)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에 앞서 『동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05. 24.
정 선 군 수

1. 공시송달대상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업 종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예정된 처분내용
동산건설(주) (이민구)	144911- 0006327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정선2006-13-01)	강원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096-21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확인서실효)	전문건설업 영업정지4월

2. 공고기간 : 2011. 05. 25. ~ 2011. 06. 08(15일)

3. 공고장소 : 정선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

5. 기타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항을 건설산업 정보통신망(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선군청 건설방재과(☎ 033-560-21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 ②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15, 2004.12.31, 2005.11.8, 2007.5.17, 2009.12.29>
- ③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 <개정 1999.4.15, 2005.11.8, 2007.5.17>
-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정선군공고 제2011-322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1. 5. 31.

정 선 군 수

1.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가. 공시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기준
-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 : 119,329필지
- 다. 공시 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²)당 가격(원)
- 라. 공시 방법 : 공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 가. 기 간 : 2011. 6. 1 ~ 2011. 6. 30(30일간)
-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다. 제 출 처 :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
- 라.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와 가격을 제시하여 제출

3. 기타사항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 033-560-22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323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토지특성 및 비교표준지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결정·공시 합니다.

2011. 5. 31.

정 선 군 수

1.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결정·공시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06년~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나. 개별공시지가 필지수 :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629외 7필지

다. 공시사항 : 개별필지 단위면적(m²)당 가격(원)

라. 공시방법 : 공시문 게시

2. 이의신청방법

정정 결정·공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1. 6. 30. 까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의문사항에 대하여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과표팀(033-560-228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내역

토지소재지		지목	년 도 기준일	결정지가	정정 결정 공시 가격
리 별	지번				
정선읍 북실리	629	전	2010.1.1기준	85,300	40,900
고한읍 고한리	36-7	대	2010.1.1기준	143,000	110,000
고한읍 고한리	산1-195	임야	2010.1.1기준	151,000	110,000
사북읍 사북리	356-239	잡종지	2009.1.1기준	769,000	205,000
			2008.1.1기준	763,000	205,000
			2007.1.1기준	660,000	190,000
			2006.1.1기준	611,000	170,000
신동읍 예미리	712	대지	2010.1.1기준	140,000	14,000

정선군공고 제2011-324호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안내 및
열람공고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굴암리, 광하리 일원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4조의 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의견청취와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05. 27.

정 선 군 수

1.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목적 : 「자연공원법」 제4조의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5, 동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군립공원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청취 및 열람
2.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가. 일 시 : 2011년 6월 17일 (금) 14:00시
 - 나. 장 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
3. 주민설명회 개요
 - 가. 병방산 군립공원 지정(안)
 - 위 치 : 정선읍 북실리, 굴암리, 광하리 일원
 - 면 적 : 1,375,433㎡
 - 나.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
4.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11년 5월 27일 ~ 2011년 6월 16일
 - 나. 열람장소 : 정선군 녹색환경과
5.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가. 공청회 당일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 나. 공청회 개최 후 7일(2011. 6. 24)까지 정선군 녹색환경과에 서면으로 제출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녹색환경과(☎560-23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2011-1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 공고

2010년도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결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5. 27.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재 무 상 태 표

제 7기 (당)기 2010년 12월 31일현재

제 6기 (전)기 2009년 12월 31일현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I. 유 동 자 산		135,311,743		374,627,627
1. 현금및 현금등가물 (세입세출외현금: 35,311,743원)	35,311,743		274,627,627	
2. 단기금융상품	100,000,000		100,000,000	
II. 비 유 동 자 산		0		0
(1) 수탁투자외기타자산		0		0
사업장 전도금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550,000 (1,550,000)		1,550,000 (1,550,000)	
(2) 수탁유형자산(주2-4)				0
1. 입 목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80,427,900 (180,427,900)		180,427,900 (180,427,900)	
2.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715,840 (7,979,250) (2,736,590)		10,715,840 (5,836,480) (4,879,360)	
3. 구 축 물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638,341,380 (647,134,690) (991,206,690)		1,234,615,630 (369,050,260) (865,565,370)	
4. 기 계 장 치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40,626,160 (38,404,310) (2,221,850)		40,626,160 (32,063,450) (8,562,710)	
5. 차 량 운 반 구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60,522,410 (190,131,700) (70,390,710)		254,573,610 (154,478,640) (100,094,970)	
6. 공 기 구 비 품 (감가상각누계액) (수탁자산취득보조금)	681,850,410 (568,220,390) (113,630,020)		640,923,370 (497,909,000) (143,014,370)	
(3) 수탁무형자산(주2-4)		0		0
개 발 비 (수탁자산취득보조금)	28,084,400 ① (28,084,400)		49,005,990 ② (49,005,990)	
자 산 총 계		135,311,743		374,627,627

재무상태표계속

계 정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부 채				
I. 유 동 부 채		35,311,743		274,627,627
1. 미 지 급 금	-		249,889,800	
2. 예 수 금	35,311,743		24,737,827	
II. 비 유 동 부 채				
부 채 합 계		35,311,743		274,627,627
자 본				
I.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1. 자 본 금	100,000,000		100,000,000	
II. 자 본 잉 여 금				
III. 이월이익 잉 여 금				
1. 이 익 준 비 금				
2.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 0)				
(전기순이익 : 0)				
자 본 합 계		100,000,000		100,000,0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5,311,743		374,627,627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참조”

손 익 계 산 서

제 7 (당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 (전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I. 영 업 수 익		3,017,639,110		2,593,036,060
1) 대행사업 수 익	3,487,498,000		2,945,887,000	
2) (정 산 반 환 금)	(439,985,740)		(242,523,430)	
③ 3)(자본예산대체)	(29,873,150)		(110,327,510)	
II. 영 업 비 용		3,017,639,110		2,593,036,060
1) 급 여	546,087,970		487,089,480	
2) 제 수 당	269,629,820		254,586,350	
3)무기계약근로자보수	522,308,860		398,460,890	
4) 기간제근로자보수	90,422,000		93,144,750	
5) 퇴 직 급 여	144,248,020		104,168,050	
6) 기 관 성 과 급	145,376,360		107,065,280	
7) 복 리 후 생 비	408,084,440		348,098,120	
8) 여 비 교 통 비	32,150,840		35,302,860	
9) 통 신 비	14,550,720		13,155,920	
10) 수 도 광 열 비	274,932,540		192,676,850	
11) 공공요금 및 제세	11,416,220		9,466,900	
12) 일 반 수 용 비	67,725,460		45,184,020	
13) 피 복 비	12,036,190		28,488,500	
14) 도 서 인 쇄 비	29,431,590		39,912,930	
15) 지 급 임 차 료	10,130,660		3,212,220	
16) 수 선 유 지 비	78,054,620		63,564,970	

손익계산서계속

계 정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17) 차 량 유 지 비	30,292,460		23,697,530	
18) 보 험 료	33,717,110		32,085,580	
19) 지 급 수 수 료	112,054,550		83,581,670	
20) 업 무 추 진 비	4,298,400		6,577,250	
21) 관 서 업 무 비	8,350,120			
22) 교 육 훈 련 비	9,603,000		5,429,000	
23) 재 료 비 기 타	116,829,710		74,203,770	
24) 행 사 등 잡 비	45,607,450		40,135,350	
25) 포 상 금	250,000		34,747,820	
26) 배 상 금	50,000		69,000,000	
Ⅲ. 영 업 이 익(손실)		0		0
Ⅳ. 영 업 외 수 익		0		0
1) 수 입 이 자	36,547,419		33,630,773	
(정 산 반 환 금)	(36,547,419)		(33,630,773)	
Ⅴ. 영 업 외 비 용	-		-	
Ⅵ. 경 상 이 익(손 실)		0		0
Ⅶ. 특 별 이 익		-		-
Ⅷ. 특 별 손 실		-		-
Ⅸ. 당기순이익(손실)		0		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참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7(당)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제 6(전)기 (2009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1년 3월 일

처분확정일 2010년 3월 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 원)

과 목	제 7 (당)기		제 6 (전)기	
	금	액	금	액
I.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0		0
1.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		-	
2.전 기 손 익 수 정 이 익	-		-	
3.전기 손 익 수 정 손 실	-		-	
4.수정후전기이월잉여금	-		-	
5.당 기 순 이 익		0		0
II. 잉 여 금 처 분 액		0		0
III. 차기이월이익잉여금		0		0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참조“

현 금 흐 름 표

제 7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 6기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단위: 원)

과 목	제 7(당) 기		제 6(전) 기	
	금 액		금 액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9,315,884)		623,539
1. 당기순이익	-		-	
2. 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	
가. 감가상각비	-		-	
3. 현금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		-	
4.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239,315,884)		623,539	
가. 미지급금의증가(감소)	(249,889,800)		(10,529,293)	
나. 예수금의증가(감소)	10,573,916		11,152,83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54,174,490)		(715,891,14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00,000,000	
가.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454,174,490		815,891,140	
가.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00,000,000	
나. 수탁자산의 취득	454,174,490		715,891,140	
입 목의 취득			16,981,000	
건 물의 취득	-		-	
구축물의 취득	403,725,750		557,139,640	
기계장치의 취득	-		-	
차량운반구의 취득	5,948,800		73,739,210	
공기구비품의 취득	42,508,940		51,874,290	
개발비의 지출	1,991,000		16,157,00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54,174,490		715,891,14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464,345,150		723,257,510	
가.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증가	464,345,150		723,257,510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0,170,660		7,366,370	
수탁자산취득보조금반납	10,170,660		7,366,370	
IV. 현금의 증가(감소)		(239,315,884)		623,539
V. 기초의 현금		274,627,627		274,004,088
VI. 기말의 현금		35,311,743		274,627,627

“별첨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010년 12월 31일현재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 공단개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나. 연 혁 : 2004. 06. 29.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4. 09. 01.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
2004. 09. 01.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사업개시
2005 .01. 01. 시설물 추가수탁(아라리촌, 향토박물관, 천포금광촌)
2006. 01. 01.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 수탁
2006. 05. 01. 시설물 추가수탁(모노레일 관리운영)
2008. 12. 22. 시설물 추가수탁(도사곡 휴양림)
2009. 09. 23. 시설물 추가수탁(고한 모노레일)
2009. 12. 18. 시설물 추가수탁(공설묘지 및 화장장)

다. 자 본 금 : 1억원

라. 주요사업 : 화암관광지 관리운영
고한생활체육공원 관리운영
임계농민문화센터 관리운영
정선아라리 촌 관리운영
정선군 향토박물관 관리운영
천포금광촌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
모노레일 관리운영
도사곡 휴양림 관리운영
공설묘지 및 화장장 관리운영

마. 임.직원수 : 총 60명 (이사장, 일반직 11명, 기능직 16명, 시설관리직 23명, 환경미화직 6명.
기간제근로자 3명)

바. 조직기구 : 이사장, 이사회, 비상임감사, 4개팀(경영혁신팀, 관광지운영팀, 시설운영팀, 휴양림운영팀)

사. 군 세외수입금 현황 : 군 세외수입금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증감액	증감율
상가 임대료	15,952	20,552	△4,600	△22.38
화암약수 야영료	25,752	16,732	9,020	53.91
화암동굴 관람료	1,141,190	1,024,502	116,688	11.39
상품판매 수입금	7,556	12,166	△4,610	△37.89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	2,160	△2,160	△100
모노레일 탑승료	341,709	331,714	9,995	3.01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54,692	366,279	△11,587	△3.16
아라리촌전통가옥사용료	25,900	17,750	8,150	45.92
도사곡휴양림펜션사용료	199,410	122,660	76,810	62.65
하늘터사용료	23,730	-	23,730	-
하늘공원사용료	31,373	-	31,373	-
기타수입	76,965	80,194	△3,229	△4.03
계	2,244,229	1,994,709	249,580	12.51

2. 재무제표 작성 기준 및 주요 회계 처리방법

재무제표는 지방공기업법 제 66종에서 요구하는 보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결산지침, 공단회계규정 등에 따라 작성되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보고와는 다를 수 있으며, 주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예산결산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정선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쳐 정선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결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2) 수익의 인식기준

시설관리공단은 정선군에서 위탁한 사업의 세입의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며, “군” 세외수입금은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 “군”에 납입하고 있다.

(3) 대행사업비의 정산

“군”으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년도 말에 잔액이 있는 경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교부자금운용시 발생한 수입이자를 “군”에 반환하고 이를 정산반환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4) 유형고정자산, 수탁유형자산, 수탁무형자산

자본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이므로 유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자본금 이외 수탁자산취득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군”의 자산이므로 수탁자산에 계상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다.

감가상각방법은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에 의거 공단이 정한 내용년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자본금으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며, 수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을 증액하고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감액하여 수탁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수탁무형자산(개발비)은 감가상각비를 수탁무형자산 및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을 직접 상계하여 표시한다.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를 실질적으로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5)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기말현재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소요액 전액을 농협중앙회 정선군 지부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않으며, 당기말 현재 확정 기여형 연금불입잔액은 503,139,665원 이다.

3. 현금과예금,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없다..

(단위 : 원)

과 목	예금종류	금 액	예 입 처	비 고
현금과 예 금	보통예탁금	-	정선농협 동면지점	대행사업비
	보통예금	35,311,743	정선농협 동면지점	수입지출외
	소 계	35,311,743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100,000,000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자본금
	계	135,311,743		

4. 정산반환금

당기발생 정산반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내역	정산반환금총액	당기반납액	미지급금
대행사업비	439,985,740	439,985,740	-
이자수익	36,547,419	36,547,419	-
수탁자산취득보조금	10,170,660	10,170,660	-
합계	486,703,819	486,703,819	-

5. 보험가입자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차량운반구에 대하여는 차량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6.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간접법으로 작성되었으며, 당기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적요	금액
1. 수탁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의 감소	454,174,490
2. 수탁자산처분감소/수탁자산감가상각누계액 및 취득보조금의감소	1,578,900